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 적용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82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관계기관 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8. 16.
3. 회 부 일 : 2024.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채권 추심자는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은 예외입니다.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 제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권침해 발생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불법적 채권 추심 및 권리 남용을 방지해 채무자의 평온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권자에게 방문 등을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¹⁾의 범위를 현행 대부업자 외에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으로 확대하여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u>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u>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u>채권추심자는</u> ----- ----- ----- ----- ----- -----

-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신금융기관</u>	<삭 제>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채권추심회사</u>	<삭 제>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u>자산관리자</u>	<삭 제>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u>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u>	<삭 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u>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u>	<삭 제>

2. 검토의견

채무자대리인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등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임²⁾.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거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채권추심에 대항하여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 소멸한 채권, 무효인 채권에 대한 추심에 대해서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의 추심대응에 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혹한 빚 독촉의 문제로부터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들이 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써 채권추심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입지 않고 법률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는 것임.

다만,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여신금융기관, 채권추심회사, 자산관리자,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적용됨.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어 채권추심을 빙자한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불법추심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까지 동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과정에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한 것임³⁾.

3) <출처: 법무부>

현행 제8조의2가 신설될 당시 '13. 6. 19.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13. 6. 26. 전체회의에서 악성 연체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활용되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 채권회수 권한을 위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담보대출을 선호하는 결과를 가져와 채권추심산업의 존립 기반이 붕괴될 위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검토 의견이 개진되어 다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음.

-이후 채권추심 또한 적법한 채권 행사의 한 부분이라는 점, 채권추심이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개정안은 현행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 제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모든 채권추심자에게 확대 적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과도한 채권추심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채권추심행위의 불법 또는 불공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부업자 등이 아닌 일반 채권자(제4호)도 채무자의 대리인 외에는 채무자와 접촉할 수가 없게 되면 채권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여신금융기관, 자산관리자, 채권추심회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도 채권추심업무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어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채무자가 변제 지연 등을 위해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으며, 금융기관 등의 신용대출 감소와 이자율 상승, 일반 채권자의 채권행위 기피 및 감소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서민들이 채무를 얻는 데에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

추가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조정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채권추심 우려가 크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려는 취지로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일반 금전대여 채권자 등을 적용 제외하는 내용으로 의결됨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2024. 1. 16.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⁴⁾이 제정되어 2024. 10. 17.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동 법률 시행 후 채무자 보호 효과를 살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결론적으로, 채무자에게 연락이 금지되는 채권추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가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정책적 필요성과 함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정도, 채권추심업계의 직업 활동 자유의 제약 가능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IV.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채무자 대리인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할 때 예외 없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

4) <주요내용>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 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다. 채무조정 기준·절차 및 효력: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등: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르면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기관 외에 소액의 일반 채권자까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금융위원회는 동 개정안은 이미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 두 차례에 걸쳐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며 개정안과 같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채권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은행연합회는 채무자대리인은 다수를 대리하여 정형화된 채무조정을 제공하기에 채무자 실정에 맞는 은행권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위축될 수 있고, 변호사·법무법인 등 채무자대리인은 은행의 채무조정 제도보다는 개인회생·파산·소송 등 법적절차로 개인채무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권은 엄격하게 불공정 추심방지조치를 기 시행중이므로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신용정보협회는 적은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만 하면 변제독촉을 전혀 받지 않게 되므로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악용함으로써 제도권 채권추심업이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악성 채무자들로 인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신용대출 추

소·금리인상 등의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4